

## 교육과정운영규정

5-1-22

규정번호 5-1-22  
제정일자 2015.12.3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21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으로 구분하고, 전공은 학과별 전공과정 및 통합전공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개정 2017.06.20.)

②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와 학과·부서별 교육목표의 연계성
2. 사회적 요구 및 학문 발전 추이
3.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개선점(개정 2024.01.24.)
4.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부서·학과별 발전계획
5. 전공 관련 직종에서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6.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의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개정 2024.01.24.)

③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한다.

④ 교과이수에 있어 학점과 이수시간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총장의 승인 후 조정·편성할 수 있다.

⑤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무역량(NCS기반, MJC기반) 교과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9.13., 2022.12.12)

⑥ 교육과정 학점배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원격강좌 교과목 및 현장실습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10.26., 2016.12.28., 2018.08.27., 표개정 2021.09.13., 개정 2022.12.12., 표개정 2025.3.31., 2026.02.06.)

| 구분  | 편성(개설)학점       |          |           |                     |              |
|-----|----------------|----------|-----------|---------------------|--------------|
|     | 총 편성<br>(개설)학점 | 총 편성시수   | 교양교과 편성학점 |                     | 전공교과<br>편성학점 |
|     |                |          | 교양필수      | 핵심역량(직업기초<br>능력 포함) |              |
| 2년제 | 85학점 이내        | 85시간 이내  | 3학점       | 6학점 이상              | 64학점 이내      |
| 3년제 | 120학점 이내       | 120시간 이내 | 3학점       | 6학점 이상              | 96학점 이내      |

⑦ 교직과목 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본이수 영역과목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과목 중 교육학개론에 성범죄예방 및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편)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6.05.16.,2020.02.17)

⑨ 학과는 우리대학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 교과목 및 연계교과목을 교양 교육과정으로 6학점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과별 우리대학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 교과목은 직업(군) 혹은 직무별로 필요한 요구분석 및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교과목을 반영한다.(개정 2021.09.13., 2026.02.06.)

제3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에서, 통합전공교육과정은 주관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시융합지원센터, 취·창업팀, 시융합진로지원센터) 및 학과에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한다.(개정 2017.6.20.,2018.2.26.,2019.6.17.,2022.6.8.,2024.7.24.,2026.02.06.)

②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에 한하여 전공교과 편성학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열에 따른 학과별 편성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특성 및 관련 법령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업계열 학과 50% 이상
2. 인문사회계열 학과 20% 이상
3. 예체능계열 학과 50% 이상(개정 2019.11.25.)

④ 현장실습교과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06.20., 2022.12.12)

제3조의 2(일반선택 교육과정 편성) 오프캠퍼스 관련 일반선택 교육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고려하여 편성한다.(신설 2019.10.21.)

제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일반)교양 교과목은 교무처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개정 2018.08.27., 2018.10.29., 2021.08.18., 2022.06.08., 2022.12.12.,2023.03.30.,2024.7.24)

1.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함양(신설 2022.12.12.)
2. 인성함양과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지적소양과 통찰력 습득(신설 2022.12.12.)
3. 학제 간 융·복합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신설 2022.12.12.)
4. 학생 및 산업체의 요구사항 반영(신설 2022.12.12.)
5. 우리대학 핵심역량 및 NCS 직업기초능력(신설 2022.12.12., 개정 2026.02.06. )

② 다양한 교양교과 운영 및 교과목 선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공교육과정 편성보다 우선하여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해당 전공의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편성한다.(신설 2018.10.29.)

##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2 교육과정운영규정

④ 편성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개설한다.  
(신설 2018.10.29., 개정 2021.08.18., 2022.06.08., 2024.7.24)

⑤ 오프캠퍼스 관련 교양과정은 해당부서에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고려하여 편성한다.(신설 2019.10.21.)

⑥ 교양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03.30.)

1. 수강인원 부족 등 2개 학기 연속하여 폐강된 경우
2. 수강신청 인원 대비 교과목 이수율 50% 이하인 경우
3. 강의평가 기준점수 미달인 교과목

⑦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양필수 외의 교과목에 대해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03.30.)

제5조(위원회 운영) ① 교육과정 편성기준 및 교육과정표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규정을 따른다.

② 교육과정 편성원칙에 부합하는 전공·교양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학과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한다.(개정 2018.08.27., 2022.08.08., 2022.12.12)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사명, 부서·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여부
3. 우리대학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개정 2021.09.13., 2026.02.06.)
4. <삭제(2024.01.24.)>
5.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의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개정 2024.01.24.)

③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개정 2021.09.13., 2022.08.08., 2022.12.12)

④ 교양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개정 2018.08.27., 2022.08.08., 2022.12.12., 2024.7.24)

제 5조의2(주관부서) 전공 관련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 및 본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며, 교과과정위원회 및 교양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주관한다.(신설 2022.12.12., 개정 2024.7.24)

제 6 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3. 부칙 개정>

##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2 교육과정운영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원칙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24조 제2항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22 교육과정운영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항제6항,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5조의2)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4조제6항, 제4조제7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제3호제6호, 제5조제2항제4호제5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의2)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제6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항·제9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2항제3호)